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4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진공노면청소 차량운행 업무 및 환경기동반운영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정과 소관 시세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권한의 단위사무 중 체납처분, 결손처분, 관허사업제한, 서류의 송달, 징수촉탁, 공탁 및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사무의 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별표)
-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수수당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진공노면청소차 관련 업무와 환경기동반(노조사무 제외)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없음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5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 진공노면청소 차량운행 업무 및 환경기동반운영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정과 소관 시세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권한의 단위사무 중 체납처분, 결손처분, 관허사업제한, 서류의 송달, 징수촉탁, 공탁 및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사무의 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별표)
- 나.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수수당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다.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진공노면청소차 관련 업무와 환경기동
반(노조사무 제외)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세정과 1호의 단위사무명란중 바목·사목·자목·과목·거목·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사 무 명
바. 체납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사. 결손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자. 관허사업제한(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과. 서류의 송달(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거. 징수촉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너. 공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 500만원 이상 제외)

별표의 제1호 가정복지과에 8. 장수수당에 관한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8. 장수수당에 관한 권한	가. 장수수당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별표의 제1호 청소과 1호란에 나목란 및 다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나.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다.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노조사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

현					개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세정과	1. 시세부과 징수 사무에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가.~마.(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세법」 제30조의3 · 동법시행령 제14조 · 「지방세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구청 장	---	1. ---	가.~마.(현행과 같음)		---	
		바. <u>채납처분</u>					바. <u>채납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사. <u>결손처분</u>					사. <u>결손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아.(생 략)					아.(현행과 같음)			
자. <u>관허 사업의 제한</u>	자. <u>관허사업의 제한(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차.~타.(생 략)					차.~타.(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u>과. 서류의 송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51조, · 「지방세법」 제51조의2 				<u>과. 서류의 송달(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u>거. 징수촉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56조 				<u>거. 징수촉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u>너. 공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2조 				<u>너. 공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u>더. 세무공무원 의 질문·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4조, · 동법시행령 제49조 				<u>더.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채납액500만원 이상 제외)</u>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가정 복지과	1.~7.(생 략)				---	1.~7.(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장수 수당에 관한 권한	가. 장수수당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부천시장수수당 지급조례	
청소과	1. 「폐기물관 리법」에 의 한 다음의 권한	가.(생 략) <u><신 설></u> <u><신 설></u>			---	1.-----	가.(현행과 같음) 나. 진공노면 청소차 관련 사무 다. 환경기동반 관련 사무 (노조사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